

글로벌 유동성 관리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

글로벌 유동성 관리서비스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시행일 : 2012년 9월 3일
- 기존 글로벌 유동성 관리서비스 고객에게 해당 여부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변경된 약관은 이미 글로벌 유동성 관리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여 이용중인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고객상세정보, 참가자 세부정보, 마스터은행, 관계은행, 요청서비스, 서명 기재 페이지	(삭제)
<p>(기본약관) 1. 머리말</p> <p>1.2 GLS 약관에 국가별 조건(Country Conditions) (해당되는 경우)이 첨부 될 수 있으며, 본 기본 약관, <u>서비스 약관</u>, 국가별 조건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국가별 조건은 상충 범위에 한하여 각 참여자의 기본 약관 및 <u>서비스 약관</u>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기본 약관, <u>서비스 약관</u>, 해당 부속서 및 국가별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이들이 고객, 참가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의 단일한 하나의 합의를 구성함을 인정한다.</p> <p>1.5 각 참가자는 고객에 본인 그리고 각 참가자를 대신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련 은행이 운영하는 추가 서비스 및 서비스의 변경 사항 또는 GLS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상, 합의하고 이를 체결 할 수 있는 권한 및 동 합의를 명시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기본약관) 1. 머리말</p> <p>1.2 GLS 약관에 국가별 조건(Country Conditions) (해당되는 경우)이 첨부 될 수 있으며, 본 기본 약관, <u>보충 약관</u>, 국가별 조건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국가별 조건은 상충 범위에 한하여 각 참여자의 기본 약관 및 <u>보충 약관</u>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기본 약관, <u>보충 약관</u>, 해당 부속서 및 국가별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이들이 고객, 참가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의 단일한 하나의 합의를 구성함을 인정한다.</p> <p>1.5 각 참가자는 고객에 본인 그리고 각 참가자를 대신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련 은행이 운영하는 추가 서비스 및 서비스의 변경 사항 또는 GLS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상, 합의하고 이를 체결 할 수 있는 권한 및 동 합의를 명시하는 문서에 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기본약관) 1.6 정의</p> <p>“계열사”란 어떤 인(person)과 관련하여 상기 인(person)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u>실체 및 기관</u>(entity), 동 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하는 <u>실체 및 기관</u> 또는 동 개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 통제 하에 있는 <u>실체 및 기관</u>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u>실체 및 기관</u> 또는 인에 대한 “통제”라함은 해당 <u>실체 및 기관</u> 또는 인의 표결권 중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	<p>(기본약관) 1.6 정의</p> <p>(신설)“계좌 통지서”란 9.3조항에 명시된 서비스 변경사항의 이행을 위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마련된 통지서를 의미한다.</p> <p>“계열사”란 어떤 인(person)과 관련하여 상기 인(person)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기관(entity), 동 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하는 기관 또는 동 개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 또는 인에 대한 “통제”란 해당 기관 또는 인의 표결권 중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

“관계은행”이란 부속서 2에 명시된 각 기관 그리고 관계은행가입계약서(서비스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라)에 준하여 GLS 약관의 당사자가 되는 기타 각 기관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는 HSBC 그룹 계열사를 의미한다.

“서명권자”란 해당 법률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에 의해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영업일”이란,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권의 시중 은행들이 관련 통화의 거래 수행 및 지급 결제를 위해 영업점을 운영하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국가별 조건”이란, 해당 계좌가 개설된 또는 계설 예정인 관할권 그리고/또는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고객 또는 참가자의 기본 약관 및 서비스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수정 그리고/또는 보충하는 해당 “국가별 조건”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서비스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라) 또는 참가자가입계약서(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에 첨부된 관할권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의미한다.

“고객”이란 GLS 약관 서명 페이지에 명시된 고객을 의미한다.

“GLS 약관”이란 Section 1, 본 기본 약관, 서비스 약관, 해당 국가별 조건 그리고 모든 부속서를 의미한다.

“마스터 은행”이란 GLS 약관의 서명 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HSBC 그룹 계열사를 의미한다.

“기본 약관”이란 GLS 약관의 Section 2 Part 1에 첨부된 약관을 의미한다.

“참가자”란 부속서 1에 명시된 각 당사자 그리고 참가자가입계약서(서비스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라)에 준하여 GLS 약관의 당사자가 된 기타 각 기관을 의미한다.

“관계은행”이란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각 기관 및 관계은행 가입 계약서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관리 보충 약관의 당사자가 되는 기타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는 HSBC 그룹 계열사를 의미한다.

(신설)“관계은행 가입 계약서”란 9.5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계은행을 추가하기 위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만족 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마련된 약정서를 의미한다.

“서명권자”란 해당 법률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에 의해 이들이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영업일”이란,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권의 시중 은행들이 거래 수행 및 지급 결제를 위해 영업점을 운영하는 날을 의미한다.

“국가별 조건”이란, 해당 계좌가 개설된 또는 계설 예정인 관할권 그리고/또는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관할권 그리고/또는 해당 관할권의 법이 21 조항에 따른 준거법으로 선택된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고객 또는 참가자의 기본 약관 및 보충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수정 그리고/또는 보충하는, 기본 약관 또는 보충 약관, 서비스 양식 또는 참가자가입계약서에 첨부된 해당 “국가별 조건”에 명시된 관할권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의미한다.

“고객”이란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고객을 의미한다.

“GLS 약관”이란 본 기본 약관, 보충 약관, 해당 국가별 조건 그리고 서비스 양식을 의미한다.

“마스터 은행”이란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HSBC 그룹 계열사를 의미한다.

“기본 약관”이란 본 문서의 약관을 의미한다..

“참가자”란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각 당사자 그리고 참가자가입계약서(보충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라)에 준하여 GLS 약관의 당사자가 된 기타 각 기관을 의미한다.

(신설)“참가자가입계약서”란 아래 9.1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 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부속서”란 GLS 약관에 첨부된 모든 부속서를 의미한다.

“서비스”란 GLS 약관의 Section 1 “요청 서비스”(고객,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 합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는)에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서비스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라)에 따라 선택된 각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약관 3 조항에 준하여 제공되는 각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약관”이란 GLS 약관 Section 2 Part 2 조항과 관련한 약관을 의미한다.

체결한 계약서를 의미한다.

(삭제)

“서비스”란 서비스 양식에서 선택된 각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그리고 해당 보충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제공하는 각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삭제)

(신설)“서비스 추가 양식”이란, 9.4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GLS 약관이 개시된 이후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추가 서비스가 설명되어 있는, 고객과 해당 참가자가(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서명한 양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양식의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신설)“서비스 신청서”란, GLS 약관의 수락을 확인하고 GLS 약관의 개시 시점부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과 참가자에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고객과 해당 참가자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서명한 신청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양식의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신설)“서비스 양식”이란 서비스 신청서 또는 서비스 추가 양식을 의미한다.

(신설)“보충 약관”이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본 계약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약관을 의미한다.

(신설)“변경 통지서”란 9.6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통지서를 의미한다.

(신설)“칠판 통지서”란 9.2 조항에 명시된 서비스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통지서를 의미한다.

<p>(기본약관) 1.7 해석</p> <p>(a) <u>서비스 약관</u>, 부속서 그리고/또는 국가별 조건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기본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u>서비스 약관</u> 그리고/또는 국가별 조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p> <p>(b) GLS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상 달리 요구 되지 않는 이상 부속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p> <p>(c) 반대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p> <p>GLS 약관, 기본 약관, <u>서비스 약관</u>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언급은 수시로 수정 될 수 있는 동 약관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p> <p>"수정본"은 보충서류, 갱신본, 또는 <u>재제정</u>을 포함하며, "수정된"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p>	<p>(기본약관) 1.7 해석</p> <p>(a) <u>보충 약관</u>, <u>서비스 양식</u> 그리고/또는 국가별 조건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기본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u>보충 약관</u>, <u>서비스 양식</u> 그리고/또는 국가별 조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p> <p>(삭제)</p> <p>(b) 반대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p> <p>(i) GLS 약관, 기본 약관, <u>보충 약관</u>, <u>국가별 조건</u>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언급은 수시로 수정 될 수 있는 동 약관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p> <p>(ii) "수정본"은 보충서류, 갱신본, 또는 <u>재·개정본</u>을 포함하며, "수정된"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p> <p>(신설) (iii) 기본 약관 또는 보충 약관의 "조항"은 기본 약관 또는 해당 보충 약관에 있는 각 조항을 의미한다.</p> <p>(신설) 1.8 해당 보충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GLS약관의 조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보충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계좌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표준 약관 그리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과 고객 또는 참가자간 체결된 신용공여 조건에 따라 운영되며, 이러한 조건이 GLS약관의 조건과 상충되는 경우 GLS약관이 우선 적용된다.</p>
<p>(기본약관) 2. 구비서류</p> <p>2.1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정보 그리고 <u>위임</u>을 제공한다.</p> <p>2.2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는 <u>GLS약관(관련 부속서 및 국가별 조건을 포함)</u>에 서명이 완료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또는 상호 합의한 날짜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에 통지함과 동시에 개시된다.</p> <p>2.3 상기 2.2 조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 또는 관계 은행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해당 관계 은행에 아래 명시된 문서(마스터 은행이 동 문서의 형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p>	<p>(기본약관) 2. 구비서류</p> <p>2.1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정보 그리고 <u>권한</u>을 제공한다.</p> <p>2.2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는 <u>해당 서비스 양식 (관련 국가별 조건을 포함)</u>에 서명 완료 시점부터 또는 <u>고객과 마스터 은행</u>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호 합의한 날짜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에 통지함으로써 개시된다.</p> <p>2.3 상기 2.2 조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 또는 관계 은행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참가자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해당 관계 은행에 아래 명시된 문서(마스터 은행이 동 문서의 형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를 <u>제출</u>하지</p>

<p>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p>(a) 참가자의 설립 증명 서류 사본(날짜 기재된 등본)</p> <p>(b) 회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서</p> <p>(c) 다음과 같은 참가자의 이사회 결의서 등본(날짜 기재된 등본) (i) 본 GLS약관 및 해당 서비스(보증을 포함)의 조건을 승인 (ii) GLS약관 체결이 해당참가자에게 이익이 됨을 확인 (iii) 참가자의 담당자에 본 <u>GLS약관</u> 및 해당 서비스(보증 포함)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객이 서비스 추가, 서비스의 변경 또는 GLS약관의 수정본에 대해 협상, 동의, 체결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약관 5 조항에 언급된 문서를 포함한 상기 약관에 명시된 문서에 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p> <p>(d)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날짜 기재된 등본)¹</p> <p>(e) 법률 및 세금 자문에 대한 면책 서한(날짜 기재된 등본)</p>	<p>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p> <p>(a) 해당 참가자의 법률 서류(날짜 기재된 등본)</p> <p>(b) 해당 참가자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서</p> <p>(c) 다음과 같은 참가자의 이사회 결의서 등본(날짜 기재된 등본) (i) 본 GLS약관 및 해당 서비스(보증을 포함)의 조건을 승인 (ii) GLS약관 체결이 해당참가자에게 이익이 됨을 확인 (iii) 참가자의 담당자에 본 GLS약관(<u>또는</u> 참가자 가입계약서) 및 해당 서비스(보증 포함)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iv) 고객이 서비스 추가, 서비스의 변경 또는 GLS약관의 수정본에 대해 협상, 동의, 체결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9 조항에 언급된 문서를 포함한 상기 약관에 명시된 문서에 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p> <p>(삭제)</p> <p>(삭제)</p>
<p>(기본약관) 3. 상계와 환전</p> <p>3.2 채무의 통화가 각기 상이한 경우, HSBC 그룹의 해당 계열사는 상계를 위해 어느 한쪽의 채무를 현물 환율(spot rate)로 환전할 수 있다. <u>채무가 수자로 산출</u> 또는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HSBC 그룹의 계열사는 선의로 동 채무의 금액을 추산하여 상계 할 수 있다.</p>	<p>(기본약관) 3. 상계와 환산</p> <p>3.2 채무의 통화가 각기 상이한 경우, HSBC 그룹의 해당 계열사는 상계를 위해 어느 한쪽의 채무를 현물 환율(spot rate)로 환전할 수 있다. <u>채무가 청산되지 않거나</u> 또는 확정 되지 않을 경우, 해당 HSBC 그룹의 계열사는 선의로 동 채무의 금액을 추산하여 상계 할 수 있다.</p>
<p>(기본약관) 4. 서비스 보고</p> <p>4.1 오류 파악 및 계좌 잔액의 정확성을 위해,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제공한 모든 명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하며, 관련 법령에 다른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고객은 <u>돌</u>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역일(Calendar day) 기준 28 일이내에 서면으로 동 명세서 상의 오류에 대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상기와 같은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동 명세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p>	<p>(기본약관) 4. 서비스 보고</p> <p>4.1 오류 파악 및 계좌 잔액의 정확성을 위해,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제공한 모든 명세서 <u>및</u>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하며, 관련 법령에 다른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고객은 <u>상기</u> 명세서 <u>및</u> 보고서의 수령일로부터 역일(Calendar day) 기준 28 일이내에 서면으로 동 명세서 <u>및</u>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상기와 같은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동 명세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p>
<p>(기본약관) 5. 참가자의 그룹 관계</p>	<p>(기본약관) 5. 참가자의 그룹 관계</p>

<p>5.1 각 참가자와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GLS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함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참가자와 고객이 다른 참가자와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 및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 참가자와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최소한 14 역일 이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다른 참가자들 및 고객에게 사본 제공), 동 통지는 해당 참가자의 탈퇴 의사 표시 통지로서 효력을 발휘한다.</p> <p>5.2 만일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 및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상기 조항에 따른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u>동 참가자가</u>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고객에 통지하는 시점부터 즉시 <u>참가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u>. 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통지를 고객에 전달할 때까지 동 참가자에 대하여 GLS 약관이 적용된다.</p>	<p>5.1 각 참가자와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GLS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함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참가자와 고객이 다른 참가자와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 및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각 참가자와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최소한 14 역일 이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다른 참가자들 및 고객에게 사본 제공), 동 통지는 해당 참가자의 탈퇴 의사 표시 통지로서 효력을 발휘한다.</p> <p>5.2 만일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 및 고객과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상기 조항에 따른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u>해당 참가자가</u> 동일한 고객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고객에 통지하는 시점부터 즉시 <u>상기 자격을 상실한다</u>. 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통지를 고객에 전달할 때까지 동 참가자에 대하여 GLS 약관이 적용된다.</p>
<p>(기본약관) 6. 증명, 보증 및 책임</p> <p>6.1 고객과 각 참가자는 HSBC 그룹의 각 계열사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한다.</p> <p>(d) 각 참가자는 고객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의한 추가 서비스 및 서비스 변경 또는 GLS약관 개정을 협상, 동의, 체결하고, 고객 본인 및 참가자를 대신하여 동 약관에 명시된 문서 (<u>서비스 약관 5 조항</u>에 언급된 문서를 포함)를 이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f) 고객과 각 참가자는 그 명의로 된 각 계좌의 단독 수익자이며, 동 계좌와 관련한 어떠한 신탁 관계, 대리인 관계 및 기타 수익권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과 각 참가자는,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금을 이제/지급하는 참가자에 대한 <u>기록 유지를 위해 기타 참가자 및 계좌가 상기 계좌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단독 수익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u>.</p> <p>(g) (EU 법인인 참가자의 경우에만 해당) 본부 또는 본 영업지(<u>도산제도</u>에 대한 2000년 5월 29일자 유럽공동체 이사회 규정 1346/2000의 정의에 따른)가 등록 사무소 관할권에 위치하고 등록 사무소는 법인설립지에 위치한다.</p> <p>(h) (EU 법인인 참가자의 경우에만 해당) 상기 (g)항에 명시된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u>도산제도</u>에 대한 2000년 5월 29일자 유럽공동체 이사회 규정 1346/2000의 정의에 따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p>	<p>(기본약관) 6. 증명, 보증 및 책임</p> <p>6.1 고객과 각 참가자는 HSBC 그룹의 각 계열사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한다.</p> <p>(d) 각 참가자는 고객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의한 추가 서비스 및 서비스 변경 또는 GLS약관 개정을 협상, 동의, 체결하고, 고객 본인 및 참가자를 대신하여 동 약관에 명시된 문서 (<u>보증 약관 9 조항</u>에 언급된 문서를 포함)에 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f) 고객과 각 참가자는 그 명의로 된 각 계좌의 단독 수익자이며, 동 계좌와 관련한 어떠한 신탁 관계, 대리인 관계 및 기타 수익권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과 각 참가자는,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금을 이제/지급하는 참가자에 대한 <u>기록 유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으로 기타 참가자와 해당 계좌가 “re:”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로 된 각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단독 수익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u>.</p> <p>(g) 유럽 공동체(“EU”)에 설립된 법인인 참가자의 경우, 본부 또는 본 영업지(<u>도산 절차</u>에 대한 2000년 5월 29일자 유럽공동체 이사회 규정 1346/2000의 정의에 따른)가 등록 사무소 관할권에 위치하고 등록 사무소는 법인설립지에 위치한다.</p> <p>(h) EU에 설립된 법인인 참가자의 경우, 상기 (g)항에 명시된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u>도산 절차</u>에 대한 2000년 5월 29일자 유럽공동체 이사회 규정 1346/2000의 정의에 따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p>

<p>(i) 고객과 참가자는 GLS 약관의 목적상 <u>8.2 조항</u>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HSBC 그룹 계열사의 개인 정보(기본 약관 <u>8.2 조항</u>에 정의된 바에 따른) 공개, 처리, 전달에 대하여 각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p> <p>6.2 고객과 각 참가자는 본 조항의 <u>증명 또는 보증이 정확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즉시 이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통보한다.</u></p> <p>6.3 <u>기본 계약서 7 조항</u>에 따라,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 약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u>본 6 조항</u>에 명시된 증명을 반복한다.</p> <p>6.4 고객은 모든 <u>의사소통이 용어상 명확성과 명백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u></p> <p>6.5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기록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고 <u>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은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통지한다.</u> (i) 고객 또는 참가자 이름 및 주소(부속서 1 또는 참가자 가입 약정서에 명시된 이름 및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ii) 수권자의 권한 (iii) GLS 약정서 체결 시 제공되는 기타 문서, 정보, 수권 사항. 만일 상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변경 사항이 정부 등기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 수권 사항 및 문서에 의존 할 수 있다.</p> <p>6.6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GLS 약관에 준하여 수령한 고객 또는 해당 참가자(해당 되는 경우)의 지시서 (<u>지시서에 대한 차후 수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u>)간 상충이 있을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u>18.1 조항</u>에 따라 송부 되어 수령된 최초의 지시서대로 이행한다.</p> <p>6.7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 약관에 따른 모든 상황 및 각 당사자의 <u>의무에 대한 위험 수준</u>에 대한 GLS 약관에 명시된 제한 및 제외 사항이 타당함을 인정한다.</p> <p>3.4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은 (i) 고객 그리고 참가자의 서비스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 또는 보증, 명시 또는 묵시적 표현을 하지 않으며, (ii) 서비스 사용의 특정 회계 또는 과세 결과를 보증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p>	<p>(i) 고객과 참가자는 GLS 약관의 목적을 위해 <u>12.2 조항</u>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HSBC 그룹 계열사의 개인 정보(기본 약관 <u>12.2 조항</u>에 정의된 바에 따른) 공개, 처리, 전달에 대하여 각 해당 개인의 동의를 획득하였다.</p> <p>6.2 고객과 각 참가자는 본 조항의 <u>증명 또는 보증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이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통보한다.</u></p> <p>6.3 <u>11 조항</u>에 따라,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 약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u>본 조항</u>에 명시된 증명을 반복한다.</p> <p>6.4 고객은 모든 <u>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용어의 명확성과 명백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u></p> <p>6.5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기록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고 <u>커뮤니케이션이 불필요한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은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즉시 서면 통지한다.</u> (i) 고객 또는 참가자 이름 및 주소 (<u>서비스 신청서 참가자 가입 계약서에 처음 기재된</u>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ii) 수권자의 권한 (iii) GLS 약정서 체결 시 제공되는 기타 문서, 정보, 수권 사항. 만일 상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변경 사항이 정부 등기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 수권 사항 및 문서에 의존 할 수 있다.</p> <p>6.6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GLS 약관에 준하여 수령한 고객 또는 해당 참가자(해당 되는 경우)의 지시서 (<u>지시서의 차후 수정을 제외</u>)간 상충이 있을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u>22.1 조항</u>에 따라 송부 되어 수령된 최초의 지시서대로 이행한다.</p> <p>6.7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 약관에 따른 모든 상황 및 각 당사자의 <u>의무와 관련된 위험 수준</u>에 대한 GLS 약관에 명시된 제한 및 제외 사항이 타당함을 인정한다</p> <p>6.8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그리고 HSBC그룹의 기타 계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고객과 참가자의 서비스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 또는, (ii) 고객, 참가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서비스 사용의 특정 회계 또는 조세 관련 결과를 보장 또는 보증하는 행위 또는 회계, 조세 또는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행위.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약관 또는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HSBC그룹 계열사와 체결되는 모든 자금 관리 계약의 회계, 조세 그리고 법적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받을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서비스약관) 3.8 금액의 배분</p> <p>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참가자간 본 서비스 약관이 적용되는 계좌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자 및 기타 수익 또는 비용을 산정하여 배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상기 산정 및 배분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 있다.</p>	<p>(기본약관) 7. 금액의 산정 및 배분</p> <p>보통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터 은행과 관계은행은 GLS약관 또는 서비스가 적용되는 계좌와 관련하여 참가자간 이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금액에 관계없이) 및 기타 수익 또는 비용을 산정하고 배분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금액의 산정, 배분 및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전적으로 부담한다.</p>
<p>(서비스약관) 3.9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현지 법규</p> <p>고객 및 참가자는, 본 서비스 약관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참가 계좌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시, 이자율과 관련된 현지 법규상의 제한 등 계좌가 위치한 지역의 현지 법규의 지배를 받음을 인정한다. 본 서비스 약관과 관련 법규가 상충 될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 적용된다.</p>	<p>(기본약관) 8. 서비스제공 관련 현지 법규</p> <p>고객과 참가자는 GLS약관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와 관련된 서비스는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와 관련된 현지 법규상의 제한사항을 포함, 해당 계좌가 위치한 지역의 현지 법규의 적용하에 제공될 것임을 인정한다. GLS약관과 현지의 관련 법규의 조건이 상충 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p>
<p>(서비스약관) 5. 가입, 탈퇴, 계좌 변경 그리고 추가 서비스</p> <p>5.1 GLS 약관의 최초 실행 이후 참가자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참가자 가입약정서를 작성, 이에 서명하여, GLS 약관에 따라 요구되는 보충 서류 및 계좌 통지서를 동봉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p> <p>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참가자 가입약정서에 연서하여 동의 의사를 알리게 되며, 연서한 날짜에 동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연서한 참가자 가입약정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5.2 만일 참가자 가입을 취소 또는 서비스 철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철회 통지서를 작성, 참가자 본인 및 고객(고객 및 기타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의 서명을 날인하여 이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동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철회 통지서에 연서하고 해당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연서한 철회 통지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철회 통지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기본약관) 9. 가입, 철회, 계좌 변경 및 추가 서비스</p> <p>9.1 만일 어떤 회사가 GLS 약관의 최초 개시 이후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 고객(고객을 대표하고 다른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참가자 가입 계약서와 GLS 약관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출해야 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참가자 가입 계약서에 부서하고 동 가입의 이행 일자를 참가자 가입 계약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고객에 부서된 참가자 가입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며, 고객은 동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9.2 만일 참가자가 참가자 자격을 중단, 서비스를 철회, 서비스 계좌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고객(고객을 대표하여 해당 참가자 및 모든 다른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철회 통지서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동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철회 통지서에 부서하고 해당 철회의 이행 일자를 동 통지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부서된 철회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며, 고객은 동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5.3 본 서비스 약관의 이행 이후 계좌를 추가, 취소, 정지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참가자 본인 및 고객(고객 및 기타 참가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의 서명이 날인된 계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9.3 참가자가 서비스에 1 개 이상의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와 고객(본인을 대표하여 그리고 다른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이 서명한 계좌 통지서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계좌 추가, 취소, 정지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송부된 계좌 통지서에 연서하고 해당 계좌의 추가, 취소, 정지 시행 일자를 상기 통지서에 명시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연서한 계좌 통지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서된 계좌 통지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와 같은 계좌 추가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계좌 통지서에 부서하고 해당 추가의 이행 일자를 동 통지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부서된 계좌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며, 고객은 동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5.4 참가자가 서비스에 사용되는 통화를 추가, 취소,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참가자 본인과 고객(고객 및 다른 참가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의 서명이 날인된 계좌 및 통화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추가, 취소, 정지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송부된 계좌 및 통화 통지서에 연서하고 해당 계좌의 추가, 취소, 정지 시행 일자를 상기 통지서에 명시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연서한 계좌 및 통화 통지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서된 계좌 및 통화 통지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5.5 추가 서비스 요청을 원하는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는 서비스 부속서(모든 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해당되는 경우)에 고객(고객 및 기타 참가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의 서명을 날인하여 동 서비스 부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9.4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GLS약관의 최초 개시 이후에 서비스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 신청서(관련 첨부 문서와 보충 약관 포함)를 작성, 고객(본인을 대표하고 다른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의 서명을 날인하여 동 신청서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와 같은 추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상기 부속서에 연서하고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서된 서비스 부속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추가 서비스 신청서에 부서하고 해당 서비스 이행 일자를 동 신청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고객은 동 추가 서비스 신청서의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5.6 참가자가 본 서비스 약관의 실행 후 서비스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이외의 은행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관계 은행 가입약정서를 작성, 이에 서명하여 마스터 은행과 관계 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로써 상기 은행은 관계 은행이 되고 상기 계좌는 아래 명시된 가입일자의 효력 발생일부터 서비스 계좌에 추가된다.</p>	<p>9.5 만일 참가자가 해당 서비스 양식의 이행 이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이외의 은행에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서명이 날인된 관계은행가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상기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동 은행은 관계은행 약정서에 연서하고 상기 가입이 효력을 얻게되는 날짜를 명시하여 동의</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 은행의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상기 관계은행 가입계약서에 부서하고 해당 가입의 이행 일자를</p>

<p>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연서한 관계 은행 약정서를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서된 관계은행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동 계약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동 이행일자로 부터, 해당 은행은 관계은행이 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부서된 관계은행가입계약서 사본을 송부하며, 고객은 동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신설) 9.6.9.1에서 9.5 조항(포함)에 명시된 변경 사항 이외의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변경 통지서에 서명(고객을 대표하고 참가자의 대리인 자격으로)하여 이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출한다.</p> <p>(신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상기 변경 통지서에 부서하고 해당 변경의 이행 일자를 동 통지서에 기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부서된 변경 통지서의 사본을 송부하며, 고객은 동 사본을 모든 다른 참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5.7 고객이 5.1에서 5.6 조항에 따라 참가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본 서비스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해당 참가자의 권리 의무 그리고 채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p>	<p>9.7 고객이 9.1에서 9.6(포함)조항에 따라 참가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GLS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해당 참가자의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p>
<p>5.8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연서된 참가자 가입 약정서, 계좌 및 통화 통지서, 계좌 통지서, 관계 은행 가입 약정서 그리고/또는 탈퇴 통지서에 명시된 변경 사항 수시 반영을 위해 부속서 1.2 그리고 해당 부속서 및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율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대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p>	<p>9.8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서된 참가자 가입계약서, 계좌 통지서, 관계은행 가입계약서, 추가 서비스 신청서, 철회 통지서 그리고/또는 변경 통지서(해당 사항)에 명시된 변경사항 반영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서비스 수수료와 이자율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 수정 또는 교체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p>
<p>5.9 5.8 조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해당 부속서 및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이자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고객 및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현행 시장 이율의 중대한 변화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해당 자금조달을 위한 지나친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에 3 영업일 전 사전서면통지를 통해 상기 이자율을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9.9 9.8 조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정기적으로 해당 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이자율을 검토할것이며,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금액에 대한 조달 비용이 합당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정도로 시장 이율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에 3 영업일 이전 서면통지로써 이자율을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p>
	<p>(신설) 9.10 관계은행은 9 조항에 명시된 서비스 추가 신청서 또는 통지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동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p>

<p>(서비스약관) 6. 수수료 지급</p> <p>6.1 본 서비스 약관을 체결하는 당사자 그리고 본 서비스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계좌를 유지 및 운영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보수로써,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는 부속서 해당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동안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한다.</p> <p>6.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해당 부속서 및 기타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기간을 제외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 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동 변경에 대하여 고객에 통지 및 상의하여야 하며 수수료 변경 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최소 21 역일 이전에 고객과 참가자에 사전 서면통지 해야한다.</p>	<p>(기본약관) 10. 수수료 지급</p> <p>10.1 GLS 약관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GLS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계좌를 유지 및 운영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을 약인(約因)으로,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는 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기간 동안 서비스 양식에 기재된 서비스 수수료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급해야 한다.</p> <p>10.2 마스터은행과 관계은행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1 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서비스약관) 7. 서비스 해지</p> <p>7.1 GLS 약관 또는 서비스 부속서 Section 1 “요청 서비스”에서 선택된 경우, 서비스는 다음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또는 고객이 상대방에 최소 14 역일 이전 서면통지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의한 해지 시 동 통지는 모든 참가자에 대한 통지를 구성한다.)</p> <p>7.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을 통해 참가자의 서비스 사용을 해지 할 수 있다.</p> <p>(a) 해당 참가자에게 최소 14 역일 이전 서면으로 해지 통지</p> <p>(b) 해당 참가자가 서비스 약관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 통지 없이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p> <p>7.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약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 4 조항에 명시된 보증(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는)에 대한 어떠한 침해 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에 통지 하는 즉시 해지된다.</p> <p>참가자(들) 또는 고객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진 현재 또는 미래의 부채 및 채무를 불이행 한 경우</p> <p>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서비스에 대한 보고 의무, 회계 또는 세금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p>	<p>(기본약관) 11. 해지</p> <p>11.1 서비스는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p> <p>(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또는 고객이 상대방에 최소한 14 역일 전 서면 해지 통보(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의한 해지 시 이는 모든 참가자에 대한 통지를 구성한다)하는 경우</p> <p>(b) 다음의 사유로 인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통지에 의한 즉시 해지</p> <p>(i) 하나 이상의 참가자 또는 고객의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금전채무 불이행 혹은 의무불이행</p> <p>(ii)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상의 보고 의무, 회계 또는 세금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p> <p>(iii)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 또는 참가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 및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 및 준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계좌와 관련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의무를 수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p> <p>(iv)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게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과 고객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가지는 가치가 심각한 정도로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p> <p>11.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다음의 방법으로 참가자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p>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 또는 참가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수행 및 준수를 할 수 없거나 또는 계좌와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대한 의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의 가치가 현격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약관) 7. GLS약관의 해지

7.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GLS 약관의 해지를 원할 경우 동 은행은 고객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GLS 약관을 즉시 해지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GLS 약관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7.2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최소 14일 이전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 GLS 약관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대한 채무(실제 또는 우발 채무)가 있을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GLS 약관 해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a) 해당 참가자에 최소한 14 역일 전 서면 통지

(b) 해당 참가자에 의한 GLS약관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 즉각 해지 할 수 있다.

11.3 GLS 약관은 다음의 경우 해지 될 수 있다.

(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최소 14 역일 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GLS약관을 해지 할 수 있다.

(b)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GLS약관을 즉각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없이 즉각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c) 고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최소 14 역일 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GLS약관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채무(실제 또는 우발 채무 여부에 관계없이)가 있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GLS약관을 해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신설) 11.4 서비스 또는 GLS 약관의 해지시에도 GLS 약관에 포함된 보증과 상계 권리는 그 효력을 유지하며, 해지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11.5 마스터은행이나 관계은행에 의하여 GLS약관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마스터은행이나 관계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확정채무 또는 조건부채무)는 즉시 기한이 도래된다. GLS약관은 관련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p>(기본약관) 8. 정보공개</p> <p>8.1 고객 또는 고객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HSBC 그룹 <u>내</u>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사용하는 대리인 및 제3당사자와 고객 및 고객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기밀을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HSBC 그룹 내에서 동 정보의 기밀을 엄격히 유지한다. (a) 정부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법률, 규정 및 요청에 따라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b) 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한, 고객이 HSBC 그룹 계열사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경우 (예.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해당 HSBC 그룹 계열사는 상기 제한 사항 준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한다.</p> <p>8.2 각 관할권의 정보 보호법에 준하여 (유럽 정보보호법 1995, 이하 “정보보호법” 및 동 법의 시행을 위한 모든 국가 법령을 포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이에 각 고객 및 참가자에게 모든 개인 정보 (정보보호법 상의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이하 “개인 정보”)는 GLS 약관에 따라 고객 및 각 참가자에게 계좌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HSBC 그룹 기타 계열사에 의해 <u>전 세계 계열사에</u> 공개, 처리, 전달 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p> <p>고객 및 각 참가자는 <u>GLS 약관</u>에 서명함으로써 상기 명시된 바에 따른 개인 정보의 공개, 처리, 전달에 동의하였으며 동 정보 공개에 대한 해당 개인의 동의를 <u>획득하였으므로</u>, 해당 정보보호법(상기 정보보호법을 포함)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된다.</p> <p>8.3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모든 참가자 및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 공개 할 수 있으며, <u>GLS 약관 또는 참가자 가입 약관</u>에 서명하는 것은 <u>동 공개</u>에 대한 동의를 구성한다.</p>	<p>(기본약관) 12. 정보공개</p> <p>12.1 고객 또는 고객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HSBC 그룹 <u>내에서</u>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사용하는 대리인 및 제3당사자와 고객 및 고객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기밀을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HSBC 그룹 내에서 동 정보의 기밀을 엄격히 유지한다. (a) 정부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법률, 규정 및 요청에 따라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b) 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한, 고객이 HSBC 그룹 계열사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경우 (예.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해당 HSBC 그룹 계열사는 상기 제한 사항 준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한다.</p> <p>12.2 각 관할권의 정보 보호법에 준하여 (유럽 정보보호법 1995, 이하 “정보보호법” 및 동 법의 시행을 위한 모든 국가 법령을 포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이에 각 고객 및 참가자에게 모든 개인 정보 (정보보호법 상의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이하 “개인 정보”)는 GLS 약관에 따라 고객 및 각 참가자에게 계좌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HSBC 그룹 기타 계열사에 의해 <u>전 세계적으로</u> 공개, 처리, 전달 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p> <p>12.4 고객 및 각 참가자는 <u>서비스 신청서 또는 참가자가입계약서</u>에 서명함으로써 상기 명시된 바에 따른 개인 정보의 공개, 처리, 전달에 동의하였으며 동 정보 공개에 대한 해당 개인의 동의를 <u>획득한 것으로</u> 해당 정보보호법(상기 정보보호법을 포함)의 목적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된다.</p> <p>12.5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모든 참가자 및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 공개 할 수 있으며, <u>고객과 각 참가자가 서비스 신청서 또는 참가자가입계약서</u>에 서명하는 것은 <u>상기 공개</u>에 대한 <u>고객과 각 참가자의 동의</u>를 구성한다.</p>
--	---

<p>(기본약관) 9. 수수료와 이자</p> <p>9.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계좌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u>GLS 약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u>,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u>이율이 적용된 이자 및 수수료를</u>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p> <p>9.3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고객 또는 해당 참가자의 계좌 및 기타 계좌로 부터 <u>수수료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액을 출금 할 수 있다.</u></p>	<p>(기본약관) 13. 수수료와 이자</p> <p>13.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계좌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u>인출</u> 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u>GLS 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u>,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u>이율로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u>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p> <p>13.3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고객 또는 해당 참가자의 <u>(서비스 이용)</u> 계좌 및 기타 <u>(고객 또는 해당 참가자의)</u> 계좌로부터 <u>모든 수수료를 인출 할 수 있다.</u></p>
<p>(기본약관) 10. 세금</p> <p>10.2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세금(인지세, 등록세 등을 포함) 납부를 위한 지급요청을 받게 되거나, <u>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u> 동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이체, 수령되거나 또는 지급, 이체, 수령되어야 하는 금액 또는 채무가 요청 또는 부과되는 경우, 고객 그리고 각 참가자는, 동 지급, 채무 또는 그 일부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동 고객 또는 참가자와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지급 및 채무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부리된 모든 이자, 벌금, 비용 등의 총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요청 시 즉시 지급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u>계좌(또는 기타 계좌)에 예금될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계좌(또는 기타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급할 수 있다.</u></p>	<p>(기본약관) 14. 세금</p> <p>14.2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세금(인지세, 등록세 등을 포함) 납부를 위한 지급요청을 받게 되거나, 동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이체, 수령되거나 또는 지급, 이체, 수령되어야 하는 금액 또는 채무가 <u>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u> 요청 또는 부과되는 경우, 고객 그리고 각 참가자는, 동 지급, 채무 또는 그 일부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동 고객 또는 참가자와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지급 및 채무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부리된 모든 이자, 벌금, 비용 등의 총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요청 시 즉시 지급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u>고객 또는 참가자 계좌(또는 기타 계좌) 예금 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또는 동 계좌(또는 기타 계좌)에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다.</u></p>
<p>10.3 고객 및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의 세금과 관련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신속히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제공한다.</p>	<p>14.3 고객 및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의 세금과 관련한 문서 및 기타 정보(<u>원천징수 여부를 포함</u>)를 신속히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제공한다.</p>
<p>10.4 고객 및 각 참가자는 고객 또는 참가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비즈니스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조항에 <u>구속됨을 인정한다.</u></p>	<p>14.4 고객 및 각 참가자는 고객 또는 참가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비즈니스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조항에 <u>구속된다.</u></p>
<p>10.6 고객 및 각 참가자는 <u>원천 과세가 최종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수령 또는 부과된 모든 이자를 세무사에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세 신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인정 한다.</u></p>	<p>14.6 고객 및 각 참가자는 <u>원천 징수가 최종적인 조세 채무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수령 또는 부과된 모든 이자를 세무사에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세 신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인정 한다.</u></p>

<p>(기본약관) 11. 비용</p> <p>11.1 고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법적 비용 전액을 포함)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급한다.</p> <p>(b)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권리 행사 및 <u>보전</u></p>	<p>(기본약관) 15. 비용</p> <p>고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법적 비용 등 전액 보상 기준으로)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급한다.</p> <p>(b)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권리 행사 및 <u>유지</u></p>
<p>(기본약관) 12. 수정본</p> <p>12.1 국가별 조건에 기타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GLS 약관 변경 시 28 역일의 통지 기간을 두며, 동 변경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그 지점 사무실 또는 국내외 언론에 동 변경을 통지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 통지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간 동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은 상기 통지의 사본을 다른 모든 참가자에게 송부해야 한다.</p> <p>12.2 고객이 참가자에게 <u>서비스 약관 5 조항</u>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는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고객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6. 수정본</p> <p>16.1 해당 국가별 조건에 기타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GLS 약관 변경 시 28 역일의 통지 기간을 두며, 동 변경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그 지점 사무실 또는 국내외 언론에 동 변경을 통지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 통지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객, 참가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간 동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은 상기 통지의 사본을 다른 모든 참가자에게 송부해야 한다.</p> <p>16.2 고객이 참가자에게 상기 16.1 조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는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고객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3. 양도</p> <p>해당 국가별 조건에 대한 침해 없이, 계좌와 관련한 어떠한 담보권도 양도될 수 없고, 계좌와 관련한 고객의 권리는 이전 또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의도된 담보의 설정, 양도,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7. 양도</p> <p>해당 국가별 조건에 대한 침해 없이, 계좌와 관련한 어떠한 담보권도 양도될 수 없고, 계좌와 관련한 고객 또는 어느 참가자의 권리는 이전 또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의도된 담보의 설정, 양도,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4. 가분성, 위법, 권리의 포기</p> <p>14.1 GLS 약관의 조항이 어떤 관할권에서 불법, 무효 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경우, 이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a) 동 관할권에서 GLS 약관 내 기타 조항의 효력 또는 실효성</p> <p>14.2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권리는 (i) 필요한 경우 어느 때 든 행사될 수 있으며 (ii) 중복적이며 해당 법령에 따른 권리를 제외 시키지 않으며, (iii)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포기될 수 있다. 동 권리의 행사 및 불행사의 지연은 동 권리에 대한 포기로 보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8. 가분성, 위법, 권리의 포기</p> <p>18.1 GLS 약관의 조항이 어떤 관할권에서 불법, 무효 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경우, 이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a) 동 관할권에서 GLS 약관 내 기타 조항의 효력 또는 실효성 <u>또는</u>,</p> <p>18.2 GLS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권리는 (i) 필요한 경우 어느 때 든 행사될 수 있으며 (ii) 누적되며 해당 법령에 따른 권리를 제외 시키지 않고, (iii)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포기될 수 있다. 동 권리의 행사 및 불행사의 지연은 동 권리에 대한 포기로 보지 않는다.</p>
<p>(기본약관) 17. 관할법과 관할권</p> <p>GLS 약관은 <u>대한민국 법</u>에 의해 지배되고 해석된다. 본 GLS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u>대한민국 법원</u>을 비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p>	<p>(기본약관) 21. 관할법과 관할권</p> <p>GLS 약관은 <u>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법률</u>에 의해 지배되고 해석된다. 본 GLS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u>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법원</u>을 비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p>
<p>다음 조항들은 본 기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8 조에서 20 조까지의 조항은 글로벌 계좌개설문서("GAOD")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반복된 것이며 만일 고객 및 참가자가 GAOD 를 체결 한 경우, 이들은 제 18 조 내지 제 20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이미 동의하였다.</p>	<p>(삭제)</p>
<p>(기본약관) 19. 이행</p> <p>19.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동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정한 지급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객의 반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동 은행이 선정한 지급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의 규칙 및 규정을 <u>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장관련 거래의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또는 후임 기관의 국제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u></p>	<p>(기본약관) 23. 이행</p> <p>23.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동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정한 지급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객의 반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동 은행이 선정한 지급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의 규칙 및 규정을 <u>준수하여야 한다.</u></p>
<p>19.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u>20.2 조항</u>에 명시된 사유 또는 상황에 의해 채무를 이행 할 수 없거나 채무 이행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채무 이행은 중단된다. 상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기 사유 및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은 기타 장소에서, 기타 통화로 또는 현금 제공을 통하여 상기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p>	<p>23.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u>24.2 조항</u>에 명시된 사유 또는 상황에 의해 채무를 이행 할 수 없거나 채무 이행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동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채무 이행은 중단된다. 상기 범위 및 기간 내에서 그리고 상기 사유 및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은 기타 장소에서, 기타 통화로 또는 현금 제공을 통하여 상기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p>

<p>19.4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의 경우 계좌으로부터 반드시 출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i)동 출금으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또는 (ii) 동 계좌에 압류조치가 취해진 경우. 다수의 출금이 있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어떤 출금을 우선 이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만일 어떤 출금의 이행으로 해당 계좌가 차월되거나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는 즉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동 계좌가 차월되지 않도록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자체 해야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차월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 초과를 허용한 경우, 출금의 결과로 발생한 마이너스 잔액은 동 계좌의 당좌대월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p>	<p>23.4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의 경우 계좌으로부터 반드시 출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i)동 출금으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합의된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동 계좌에 압류조치가 취해진 경우. 다수의 출금이 있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어떤 출금을 우선 이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만일 어떤 출금의 이행으로 해당 계좌가 차월되거나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는 즉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동 계좌가 차월되지 않도록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자체 해야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차월 또는 합의된 당좌차월한도 초과를 허용한 경우, 출금의 결과로 발생한 마이너스 잔액은 동 계좌의 당좌차월 한도 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p>
<p>(기본약관) 20. 책임과 면책</p> <p>20.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실 이외의 기타 손실 (이익의 손실을 포함) 및 지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u>20 조항</u>에 명시된 바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개인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배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p> <p>20.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정부 및 정부 기관의 행위, 천재지변, 법규(또는 법규 해석 변경), 강제 명령, 통화 제한, 재재, 외환관리, 쟁의행위(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설비이상, 전기공급이상, 기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이익의 손실을 포함), 손해, 지연 및 불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상기 상황의 존재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여러 관할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상기 법규 준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에게 동 조취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 또는 기타 HSBC 그룹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송부된 지급 메시지 및 기타 정보의 차단 및 조사 (b) <u>제재가 가해진</u> 개인 또는 기관을 지칭하는 이름이 실제로 동 개인 또는 기관을 지칭하는지 추가 조사 	<p>(기본약관) 24. 책임과 면책</p> <p>24.1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실 이외의 기타 손실 (이익의 손실을 포함) 및 지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u>24 조항</u>에 명시된 바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개인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배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p> <p>24.2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정부 및 정부 기관의 행위, 천재지변, 법규(또는 법규 해석 변경), 강제 명령, 통화 제한, 재재, 외환관리, 쟁의행위(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직원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설비이상, 전기공급이상, 기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이익의 손실을 포함), 손해, 지연 및 불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상기 상황의 존재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여러 관할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상기 법규 준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에게 동 조취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 또는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송부된 지급 메시지 및 기타 정보의 차단 및 조사 (b) <u>제재를 받은</u> 개인 또는 기관을 지칭하는 이름이 실제로 동 개인 또는 기관을 지칭하는지 추가 조사

<p>20.5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고객 또는 참가자에 대한 GLS 약관의 이행을 포함하여 <u>GLS</u>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기타 거래의 이행에 있어 대리인 및 제3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 대리인 또는 제3당사자 선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상기 대리인 또는 제3당사자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손실 (이익상의 손실을 포함), 손해, 지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p> <p>20.6 앞서 언급된 본 <u>20 조의 조항들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계좌에 적용되는 해당 표준 약관에 따라 보유한 모든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u></p>	<p>24.5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고객 또는 참가자에 대한 GLS 약관의 이행을 포함하여 <u>서비스의</u> 이행 또는 <u>GLS</u> 약관과 관련된 기타 거래의 이행에 있어 대리인 및 제3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 대리인 또는 제3당사자 선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상기 대리인 또는 제3당사자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손실 (이익상의 손실을 포함), 손해, 지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p> <p>24.6 앞서 언급된 본 <u>24 조항은 계좌에 적용되는 표준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보유한 모든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u></p>
<p>(서비스약관) 1. 머리말</p> <p>1.1 본 서비스 약관은, 고객, 참가자 그리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의 유동성 관리를 지배하는 GLS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기본 약관이 상충될 경우,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p> <p>1.2 GLS 약관 및 각 부속서 Section 1 의 해당 "요청 서비스"를 작성함으로써, 고객 및 각 참가자는 고객 및 참가자로 부터의 추가 권한위임과 관계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본 서비스 약관의 조항에 따라 선택된 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지시한다.</p> <p>1.3 만일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추가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약관 5.5 조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 부속서를 작성하여 마스터 은행과 관계 은행에 제출해야한다.</p> <p>1.4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된 모든 협약 및 계약서는 본 서비스 계약 및 해당 국가별 조건에 의해 대체된다.</p> <p>1.5 본 서비스 약관에 따른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기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p> <p>1.6 본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계좌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표준 약관 그리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고객 및 참가자 간 체결된 신용공여 약정의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단 이는 상기 약관 및 약정이 본 서비스 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1. 도입

(신설) 1.1 본 약관 (“**IOF 보충 약관**”)은 고객과 참가자의 IOF 서비스 사용에 적용, 이를 지배하며, 본 IOF 보충 약관이 첨부된 서비스 양식(“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상 그리고 모든 목적을 위하여 GLS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신설) 1.2 서비스 양식에서 “**최적 금리 자금관리 서비스**” (단독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를 선택함으로써,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에게 문의 또는 추가 위임 없이 본 IOF 보충 약관과 IOF 부속서에 따라 IOF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지시한다.

(서비스약관) 2. 정의와 해석	(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2. 정의
2.1 본 서비스 약관에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2.1 본 약관에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기본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본 IOF 보충 약관 및 IOF 부속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IOF 보충 약관과 IOF 부속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계좌 통지서"는 첨부된 계좌 통지 부속서 형식의 통지서를 의미한다.	(삭제)
"계좌 및 통화 통지서"는 첨부된 계좌 및 통화 통지 부속서 형식의 통지서를 의미한다.	(삭제)
"재정산이자"은 (a)(iv) 조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삭제)
"재정산이자 배분"은 "재정산이자 배분"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재정산이자를 배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삭제)
"재정산이자 연결계좌"란 해당 "재정산이자 배분"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서 해당 통화에 대하여 특정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참가자의 연결 계좌를 의미한다.	(삭제)
"관계은행 가입약정서"란 첨부된 관계은행 가입약정서 부속서 형식의 약정서를 의미한다.	(삭제)
"지정 계좌"란, 각 통화에 대하여,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Single Currency Pooling Service)"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	(삭제)
"순잔액"이란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하여 각 통화에 대해 모든 SCP 연결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을 통합한 순잔액을 의미한다.	(삭제)
"참가자"란 부속서 1에 명시된 각 참가자 그리고 참가자가입약정에 따라 GLS 약관의 당사자가 된 기타 회사를 의미한다.	(삭제)
"참가자가입약정서"란 첨부된 참가자 가입약정서 부속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약정서를 의미한다.	(삭제)
"참가 계좌"란 해당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참가자의 각 계좌를 의미한다.	(삭제)
"감독기관"이란 계좌가 위치한 관할권에서 금융 산업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삭제)

<p>"SCP 연결계좌"란 각 통화에 대하여 해당 "재정산이자 배분"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 (만일 GLS 약관 또는 서비스 부속서 Section 1 "요청 서비스"란에서 재정산이자 배분방식을 선택한 경우 배분 연결계좌를 의미)</p>	(삭제)
<p>"서비스 부속서"란 첨부된 서비스부속서표(모든 첨부 문서 포함)의 형태로 이루어진 GLS 약관의 최초 개시 후 이행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고객 및 참가자 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동 서비스 부속서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고객 및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다.</p>	(삭제)
<p>"단일통화통합관리"란 3.3 그리고 3.4 조항에 명시된 개별통화통합관리구조를 의미한다.</p>	(삭제)
<p>"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란 3.3 그리고 3.4 조항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단일통화통합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고객(고객 및 각 참가자를 대신하여)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 합의에 따른 서비스 추가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p>	(삭제)
<p>"스위핑 한도"란 현금집금연결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현금집금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p>	(삭제)
<p>"철회통지서"란 첨부된 철회통지서 부속서 형식의 통지서를 의미한다.</p>	(삭제)
<p>"기준 통화"란 해당 "IOF 서비스" 그리고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모든 부속서에 명시된 통화를 의미한다.</p>	<p>"기본 통화"란 IOF 부속서에 기본 통화로 명시된 통화를 의미한다.</p>
<p>"커버리지 비율(Coverage Ratio)"은 <u>(ii)조항</u>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신설) "환산 환율"이란, 각 IOF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IOF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매입 및 매도율을 바탕으로 (동 매입/매도율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해당 일자 외환 매입/매도율의 중간 이율(mid-rate)인 경우) 동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에서 해당 IOF 계좌의 소재지의 매일 마감시간에 도출된 환전율을 의미한다.</p>
<p>"커버드 잔액(Covered Balance)"은 <u>(ii)조항</u>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커버리지 비율(Coverage Ratio)"이란 <u>3.1(b)조항</u>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통화"란 부속서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커버 잔액(Covered Balance)"이란 <u>3.1(b)조항</u>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통화"란 IOF 부속서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신설) "신용공여 신청서"란 IOF 부속서에 명시된 IOF 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공여 신청서를 의미하며, 이는 수시로 수정, 보충, 대체 그리고/또는 갱신 될 수 있다.</p>

	<p>(신설) “그룹 한도”란, 4.2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 신청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참가자에 제공되는 IOF 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공여 한도를 의미한다.</p> <p>“이자 기간”이란 IOF 계좌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간 이자가 부리되나 지급되지는 않는 기간으로 합의된 각 기간을 의미한다</p> <p>“IOF 계좌”란 IOF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고객 또는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신설) “IOF 부속서”란 서비스 양식에 첨부되어 있는 IOF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부속서를 의미한다.</p> <p>“IOF 서비스”란 본 IOF 보충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운영하는 3조항에 명시된 최적 금리 자금관리 서비스 그리고 고객(고객 본인 그리고 각 참가자를 대표하여)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간 합의된 동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의미한다.</p> <p>(신설) “IOF 보충 약관”이란 1.1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신설) “기본 약관”은 서비스 양식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잔여 잔액”이란 3.1(b)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신설) “서비스 양식”은 1.1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신설) 2.2 기본 약관의 1.2, 1.3, 1.7조항은 본 IOF 보충 약관, IOF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약관 및 부속서에 적용된다.</p>
(서비스약관) 3. 서비스 운영	<p>(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3. IOF 서비스</p> <p>(삭제)</p>
3.1 아래 3.2에서 3.7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i) GLS 약관 또는 서비스 부속서 Section 1 “요청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가 선택된 경우 (ii) 해당 부속서가 작성 및 체결(필요한 경우)된 경우.	
3.2 IOF 서비스 -단독 서비스	<p>(a) 각 IOF계좌에 대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일별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p> <p>3.1 각 IOF 계좌와 관련하여 일별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p>

<p>(i) <u>명목적으로 각 IOF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을 지정 기준통화로 변환</u></p>	<p>(a) 각 IOF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을 환산 환율을 적용하여 지정된 기본 통화로 명목 환전한다.</p>
<p>(ii) <u>기준 통화로, 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의 비율과 총 대출에 대한 총 예금의 비율을 비교하여 총 예금을 커버하는 총 대출의 비율과 총 대출을 커버하는 총 예금의 비율("커버리지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커버드 잔액" 및 커버드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잔액의 비율("잔여 잔액")을 결정한다.</u></p>	<p>(b) 기본 통화로,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총액 그리고 대출 총액에 대한 예금 총액을 비교하여, 예금 총액을 커버하는 대출 총액의 비율과 대출 총액을 커버하는 예금 총액의 비율("커버리지 비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커버리지 비율로 "커버리지 잔액"과 커버리지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잔액의 비율("잔여 잔액")을 산출한다.</p>
<p>(iii) <u>해당 "IO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우대 예금/대출 커버드잔액 이율을 커버드 잔액에 적용하고, 해당 "IO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표준 대출 또는 예금 잔여잔액 이율(경우에 따라)을 잔여 잔액에 적용한다.</u></p>	<p>(c) 커버 잔액에, IOF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출 또는 예금 커버드 잔액 우대 이율(해당 사항에 따라)을 적용하고, IOF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잔여 잔액에 대출 또는 예금 잔여 잔액 표준 이율을 적용한다. 그리고,</p>
<p>(iv) <u>커버드 잔액에 대하여 산정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잔여 잔액에 대하여 산정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와 합산하여 각 IOF 계좌에 대한 총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산정한다.</u></p>	<p>(d) 커버 잔액에 대해 산출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해당 사항에 따라)에 잔여 잔액에 대해 산출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합산하여 각 IOF 계좌에 대한 총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산출한다.</p>
<p>(b) <u>각 이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각 IOF 계좌와 관련하여, 이자 기간동안 동 계좌에 상기 (iv) 조항에 따른 이자 비율 또는 이자 수익의 총액을 산정, IOF계좌로 이체한다.</u></p>	<p>3.2 각 이자 기간의 종료 시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각 IOF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IOF 계좌에 대해 이자 기간동안 3.1(d)조항에 따라 산출된 대출 그리고/또는 예금 이자(해당 사항에 따라) 총액을 산출하여 해당 IOF 계좌로 송금한다.</p>

(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4. 그룹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율

(신설) 4.1 고객과 각 참가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a) IOF 계좌에 유지 될 수 있는 최대 대출 잔액은, 어떤 시점에서든, 모든 IOF 계좌에 대한 대출 잔액과 합산 시 그룹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4.1(a) 또는 4.3조항에 따라 그룹한도 준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IOF 계좌에 대한 대출 잔액의 기본통화 해당금액(Base Currency Equivalents)을 합산해야한다. 기본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액의 “기본통화 해당금액”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기본 통화에 대한 해당 통화의 현행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본통화 해당금액의 총액 산출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IOF계좌에 대한 출금을 허용하기 이전에 결정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4.2 그룹 한도는 신용공여 신청서에 명시된 IOF 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과 고객간 이루어진 반대 합의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그룹 한도를 변경 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을 가지며, 변경된 한도는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고객은 모든 해당 참가자에게 변경된 그룹 한도를 통지해야 하나, 고객이 이러한 통지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한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4.3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법률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선취특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 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고객 또는 참가자에 대한 통지 없이 IOF 계좌로의 출금으로 인하여 그룹 한도가 초과 되는 경우 동 출금 조치를 거부 를 결정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을 가짐을 인정한다.

(신설) 4.4 4.3조항에 대한 침해 없이, 4.3조항에 명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OF 계좌에 대한 출금이 이행되는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해당 IOF 계좌가 그룹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즉시 이체한다. 상기의 출금 이행은 당좌차월의 제공(또는 추가 당좌차월의 제공) 또는 그룹 한도의 증액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신설) 4.5 만일, 4.4조항에 명시된 거래 이행으로, 모든 IOF 계좌의 출금가능 예금 및 대출 잔액 합산 후 순 대출 잔액이 발생하고 이러한 순 대출 잔액이 그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룹 한도 범위 이내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a) 모든 IOF 계좌의 순 대출 잔액이 그룹 한도를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IOF 계좌의 잔여 잔액에 포함된 대출 잔액의 비율에는 해당 IOF 계좌에 대한 IOF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룹 한도 초과 잔여 대출 잔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p>부리되며, 종 IOF 계좌의 나머지 잔여 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IOF 부속서에 명시된 잔여 대출 잔액에 적용되는 이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다.</p> <p>(b) 4.5조항에 따른 그룹 한도 준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각 통화별로, IOF 계좌의 출금가능 예금 잔액(cleared credit balances)을 동일 통화의 IOF 계좌의 출금가능 대출 잔액의 총 대출 잔액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ii)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산출된 각 통화에 대한 순 대출 그리고/또는 예금 잔액의 기본통화 해당금액(4.1(b)조항의 정의에 따른)을 합산한다.
(서비스약관) 4. 보증	<p>(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5. 보증, 보상 그리고 상계</p> <p>(삭제)</p> <p>5.1 IOF 서비스에 참가하는 각 참가자("해당 참가자")는 취소불능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취소불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p> <p>(a) 주요 의무로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그리고/또는 동일한 서비스에 참가하는 기타 참가자에 의한 관계 은행에 대하여 SCP연결계좌 또는 기타 참가자 IOF계좌의 대출 잔액(발생 사유에 관계없이)의 기한임수 상환을 보증하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요청 시 동 은행에 기타 참가자와 상기 대출 잔액과 관련하여 진 채무 일체를 지급 할 것을 보증한다.</p> <p>(b) 주요 의무로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요청 시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 또는 IOF서비스에 참가하는 기타 참가자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대한 SCP 연결계좌 또는 기타 참가자의 IOF계좌 대출잔액(발생 사유에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무효 또는 이행불능하게 되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입은 손실 및 무효 처리 또는 이행불능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기타 참가자로부터 상환 받기로 했던 해당 금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보상하기로 한다.</p> <p>(c)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해당 참가자 및 기타 참가자에 통지, 동의 및 요청 수령 없이 단독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 참가자의 SCP 연결계좌 또는 IOF계좌의 예금 잔액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해당 참가자에 진 채무와 해당참가자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진</p> <p>(a) 주요 의무로서, IOF 서비스에 참가하는 기타 참가자가 IOF 계좌의 대출 잔액(발생 사유에 관계없이)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적시에 정확히 지급할 것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보증하며, 기타 참가자가 이러한 대출 잔액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총액 일체에 대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요청 시 이를 즉시 지급 할 것이다.</p> <p>(b) IOF 서비스에 참가하는 기타 참가자의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은행에 대한 IOF 계좌의 대출 잔액(발생 이유에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어떤 사유로든(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화, 이행 불가 또는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손실을 입을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상기와 같은 무효화, 이행 불가 또는 효력 상실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참가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 해당 금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보상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이행한다.</p> <p>(c)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해당 참가자의 IOF 계좌의 예금 잔액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참가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기에 따라 해당 참가자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상환 및 지급 의무를 가지는 금액을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또한 해당 참가자 또는 기타 참가자에 대한</p>

<p><u>채무 금액의 상환 및 이행을</u> 상계, 및 합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단, 상기에 따른 각 참가자의 책임은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 그리고/또는 IOF서비스(단독 또는연계 서비스 여부와 관계 없이)에 따른 해당 참가자의 SCP연결계좌 또는 해당 IOF계좌의 예금 잔액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연계 은행이 해당 참가자에 대해 진 채무 금액에 한이며 동 금액으로 모두 변제되어야 한다.</p>	<p>동자, 동의 또는 요청 없이) 상계, 적용 또는 합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단, 상기에 따른 각 해당 참가자의 채무는 IOF 서비스(단독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에 따른 해당 참가자의 IOF 계좌의 예금 잔액에 대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참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며 동 금액으로 완전히 상환 가능한 범위어야 한다.</p>
<p>4.3 각 참가자는,: </p> <p>(a)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서비스 약관 및 법률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된 책임, 권리, 권한, 구제는 어떠한 이행, 불이행, 기타 사유 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기타 영향을 받지 않으며,</p> <p>(b) 상기 명시된 책임 하에 있는 한, 본 서비스 약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가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제조치를 발휘 할 수 없으며, 기타 참가자의 출연을 요구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p>	<p>5.2 각 해당 참가자는,</p> <p>(a) 상기 명시된 채무, 본 IOF 보충 약관 또는 법률에 의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부여된 권리, 권한 및 구제는 동 채무, 권리, 권한 및 구제를 취소, 손상 또는 영향을 미치는 작위, 부작위 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취소, 손상되지 아니하며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함을 인정한다.</p> <p>(b) 상기 명시된 채무가 적용되는 한, 본 IOF 보충 약관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참가자에 대한 분담금 요청 권한 또는 구제를 행사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고,</p> <p>(신설) (c) 만일 해당 참가자가 5.1조항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 해당 참가자의 IOF 계좌의 예금 잔액간 통화가 불일치 하는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5.1(c)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해 해당 통화에 적용되는 은행의 현행 환전 관행(prevailing practice)에 따른 환전율로 해당 잔액 또는 금액을 환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신설) 5.3 각 해당 참가자는 본 5조항에 따른 의무가 다음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에 동의한다.</p> <p>(a) IOF 서비스의 변경(기본 약관 9조항에 따른 변경을 포함) 또는 GLS 약관의 변경,</p> <p>(b) IOF 서비스 또는 GLS 약관과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보유한 또는 보유 예정인 기타 담보 또는 보증 이행의 변경, 교환 또는 불이행,</p> <p>(c)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기타 참가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구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또는 동 권리 및 구제를 이행하고자 하지 아니한 해당 참가자에 대한 4조항의 이행,</p> <p>(d) 본 조항을 제외하고 해당 참가자의 5조항에 따른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p>
<p>4.4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 그리고/또는 IOF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보증 발급을 요청 할 수 있다.</p>	<p>5.4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IOF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보증(parental guarantee)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p>

	<p>(GLS 보충약관 – IOF 서비스) 6. 신용공여 신청서 (신설) 서비스 양식 서명 일자 이후 IOF 서비스에 계좌를 추가한 참가자는, 이와 동시에 신용공여 신청서에 따른 해당 신용 공여의 당사자 그리고 채무자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계약서 또는 계좌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각 참가자는 신용공여 신청서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며, 신용공여 신청서에 따른 신용 공여의 채무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약속한다.</p>
	<p>(GLS 보충약관 – IEF 서비스) 1. 개요 (신설) 1.1 본 약관 (“IEF 보충 약관”)은 고객과 참가자의 IEF 서비스 사용에 적용, 이를 지배하며, IEF 보충 약관이 첨부된 서비스 양식(“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GLS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p> <p>(신설) 1.2 서비스 양식에서 “우대금리 자금관리서비스(Interest Enhancement Facility Service)”(단독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를 선택함으로써,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 또는 참가자로부터의 추가 권한위임과 관계없이 또는 이러한 추가 위임 없이도 IEF 보충 약관과 IEF 부속서에 따라 IEF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며 동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한다.</p>
<p>“기준 통화”란 해당 “IOF 서비스” 그리고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모든 부속서에 명시된 통화를 의미한다.</p> <p>“산출 기간”이란 어떤 통화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 합의에 따라 동 통화로 IEF 서비스의 참가 계좌와 관련하여 금액이 부리되는 각 기간을 의미한다.</p>	<p>(GLS 보충약관 – IEF 서비스) 2. 정의 (신설) 2.1 본 약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IEF 보충 약관과 IEF 부속서의 용어는 기본 약관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IEF 보충 약관과 부속서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신설) “총 잔액”이란 3.1(b)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p> <p>(신설) “잔액보고계좌”란 IEF 부속서에 잔액보고계좌로 명시된 각 계좌를 의미한다.</p> <p>“기준 통화”란 IEF 부속서에 기준 통화로 명시된 통화를 의미한다.</p> <p>“산출 기간”이란, 어떤 통화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통화로 IEF 계좌에 대하여 이자가 부리되는 기간으로 합의한 각 기간을 의미한다</p> <p>(신설) “환산 환율”이란, 각 IEF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IEF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매입 및 매도율을 바탕으로 (동 매입/매도율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해당 일자 외환 매입/매도율의 중간 이를(mid-rate)인 경우) 동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에서 해당 IEF 계좌의 소재지의 매일 마감시간에 도출된 환산 환율을 의미한다.</p>

<p>"통화"란 <u>부속서</u>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서비스 해당잔액 (Eligible Balance)"이란 <u>(i)조항</u>에 따라 산정된 잔액을 의미한다.</p> <p>"IEF 계좌"란, 각 통화에 대하여, 해당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IEF 서비스가 적용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IEF 서비스"란 <u>본 서비스 약관</u>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운영하는, <u>0 조항</u>에 명시된 이자 interest enhancement facility service(<u>우대 금리 자금관리 서비스</u>) 및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고객 및 각 참가자를 대신하여)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 합의에 따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p> <p>"우대 이율"이란 IEF 서비스의 각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통화에 대한 <u>IEF 서비스 부속서 3.1 조항</u>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단계별 예금이자 및 대출이자를 의미한다.</p>	<p>"통화"란 <u>IEF 부속서</u>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서비스 해당 잔액"이란 <u>3.1(a)조항</u>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p> <p>"IEF 계좌"란 IEF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IEF 서비스가 적용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또는 IEF 서비스와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공되는 계좌 정보에 동의한 개인)의 각 계좌(잔액보고계좌를 포함)를 의미한다.</p> <p>(신설) "IEF 부속서"란 서비스 양식에 첨부되어 IEF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부속서 일체를 의미한다.</p> <p>"IEF 서비스"란 <u>본 IEF 보충 약관</u>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운영하는 <u>3조항</u>에 명시된 우대금리 자금관리서비스와,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간 합의된 동 서비스에 대한 추가 및 변경 사항을 의미한다.</p> <p>(신설) "IEF 보충 약관"이란 1.1조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p> <p>(신설) "기본 약관"이란 서비스 양식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p> <p>"우대 이율"이란 IEF 서비스의 각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통화에 대해 <u>IEF 부속서에 명시된 등급별(tiered) 예금/대출 금리를</u> 의미한다.</p> <p>(신설) "서비스 양식"이란 1.1조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p> <p>(신설) 2.2 기본 약관의 1.2, 1.3, 1.7 조항은 본 약관에 그대로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 IEF 보충 약관에 준용된다.</p>
--	---

<p>(서비스약관) 3.5 IEF 서비스</p> <p>(a) 일별 산정을 위해,</p> <p>(i)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각 참가 계좌에 대한 자금결제일(value dated)의 대출 및 예금 잔액("서비스 해당잔액(Eligible Balance)")을 장부에 기록하고, 당일 마감시간(해당 참가 계좌가 개설된 곳의) 기준으로 동 "서비스 해당잔액"을 기준 통화로 명목상 환전한다. 명목 환전 시 해당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율을 적용한다.</p> <p>(ii) 상기 환전이 이루어 진 경우, 기준 통화로 환전된 해당 대출 및 예금 잔액의 합계를 산출하여 명목 순 대출 및 예금 잔액을 산출한다.</p> <p>(iii) 만일 명목 환전이 이행되는 날짜에, 해당 "IEF 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시의적절한 시점에 환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일 동 통화에 대한 명목 환전에 적용된 환율을 사용한다.</p> <p>(b) (i) 매일 (i)항에 따라 산출된 명목 순 예금 및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해당 "IEF 서비스" 부속서 3.1 조항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우대 이율을 사용하여 각 참가 계좌의 서비스 해당 잔액에 실제로 부리되는 예금 또는 대출 이자가 산출된다.</p> <p>(ii) 각 통화에 대한 산출기간 종료시, 산출기간동안 각 참가 계좌에 대하여 해당 통화로 산출된 이자의 총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정한 날짜에 해당 참가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된다. 이외에는 참가 계좌의 서비스 해당 잔액 대하여 어떠한 이자도 부리되지 않는다.</p>	<p>(GLS 보충약관 - IEF 서비스) 3. IEF 서비스</p> <p>3.1 일별 산출을 위해,</p> <p>(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각 IEF 계좌의 출금가능/결제일 잔액("서비스 해당 잔액")을 기록해야 하며, 동 산출을 위해, 마감 시간(해당 IEF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곳의 마감시간)에 환산 환율로 서비스 해당 잔액을 기준 통화로 명목 환전한다. 그리고,</p> <p>(b) 상기 명목 환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통화로 명목 환전된 대출/예금 잔액은 합산되어 명목 총 순 대출/예금 잔액("총 잔액")이 된다.</p> <p>3.2 일별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해당 우대 이율에 따라 예금 또는 대출 이자가 산출되어, 해당 이자가 각 IEF 계좌(잔액보고계좌 볼포함)의 서비스 해당 잔액에 실제 부리된다.</p> <p>3.3 각 통화에 대한 산출 기간 종료 시점에, 각 통화의 IEF 계좌(잔액보고계좌 볼포함)에 대해 산출된 해당 기간의 이자 총액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명시한 일자에 IEF 계좌로부터 출금 또는 동 계좌에 입금된다. IEF 계좌에 있는 서비스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이외의 어떠한 이자도 부리되지 않는다.</p> <p>(신설) 3.4 IEF 서비스의 잔액보고계좌에는 어떠한 특별 이자율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잔액보고계좌의 서비스 해당 잔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약관 그리고/또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부리된다.</p>
--	---

	<p>(GLS 보충약관 – 현금집금서비스) 1. 개요</p> <p>(신설) 1.1 본 약관 (“CCS 보충 약관”)은 고객과 참가자의 현금집금서비스 사용에 적용, 이를 지배하며, 본 CCS 보충약관이 첨부된 서비스 양식(“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상 그리고 모든 목적을 위하여 GLS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p> <p>(신설) 1.2 서비스 양식에서 “현금집금서비스”(단독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와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를 선택함으로써,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고객 또는 참가자에게 문의 또는 추가 위임 없이 본 CCS 보충 약관과 CCS 부속서에 따라 현금집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지시한다.</p>
<p>“현금집금모계좌”란 각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현금집금”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현금집금 연결계좌”란 각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현금집금”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개설된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이란 해당 “재정산이자 배분”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미를 지닌다</p> <p>“통화”란 부속서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GLS 보충약관 – 현금집금서비스) 2. 정의</p> <p>(신설) 2.1 본 약관에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기본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본 CCS 보충 약관 및 CCS 부속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CCS 보충 약관과 CCS 부속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p> <p>“현금집금 모계좌”란, 각 통화와 관련하여, CCS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신설) “현금집금서비스”란 본 CCS 보충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3조항에 명시된 현금집금서비스와, 고객(고객 및 각 참가자를 대표하여) 그리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간 합의된 서비스 추가 및 변경을 의미한다.</p> <p>“현금집금 연결계좌”란, 각 통화와 관련하여, CCS 부속서에 명시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개설된 참가자의 계좌를 의미한다.</p> <p>(신설) “CCS 부속서”란, 서비스 양식에 첨부된 현금집금서비스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첨부서류/부속서를 의미한다.</p> <p>(신설) “CCS 보충약관”이란, 1.1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지닌다.</p> <p>“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이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스위핑 시간에 해당 스위핑 시간까지 자금이 수령된 모든 거래를 감안하고 난 직후 해당 계좌에 기록한 예금 또는 대출 잔액(해당 사항)을 의미한다.</p> <p>“통화”란 CCS 부속서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p>

<p>"<u>공휴일 조정옵션</u>"이란 스위핑 시간이 <u>비영업일(해당 “현금집금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u> 경우 스위핑 시간 전날 또는 다음날을 의미한다.</p>	<p>"<u>공휴일 조정 옵션</u>"이란, 스위핑 시간이 <u>비영업일인 경우, 3.1(a)조항에 명시된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 스위핑 시간 이전 또는 이후 (CCS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따라)</u>를 의미한다.</p>
<p>"<u>이자 기간</u>"이란 각 통화에 대하여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계좌의 합의에 따라 이자가 부리되나 지급되지는 않는 각 기간을 의미한다.</p>	<p>"<u>이자 기간</u>"이란, <u>통화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합의에 따라 계좌에 이자가 부리되나 지급되지는 않는 각 기간을 의미한다.</u></p>
<p>"<u>최소 잔액</u>"이란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u>현금집금서비스</u>” 부속서 또는 <u>서비스 부속서에</u>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그러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시스템 상 최소 잔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 ‘0’을 의미한다.</p>	<p>"<u>최소 잔액</u>"이란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u>CCS 부속서에</u>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그러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시스템 상 최소 잔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 “0”을 의미한다.</p>
<p>"<u>최소 스위핑금액</u>"이란 현금집금연결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u>현금집금서비스</u>”부속서 또는 <u>서비스 부속서에</u>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그러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시스템 상 최소 잔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u>잔액 ‘0’</u>을 의미한다.</p>	<p>"<u>최소 스위핑 금액</u>"이란,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u>CCS 부속서에</u>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그러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 상 <u>최소 스위핑 금액</u>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u>금액 “0”</u>을 의미한다.</p>
<p>"<u>고정 잔액</u>"이란 현금집금연결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u>현금집금연결계좌</u>” 부속서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명시된 금액이 없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시스템상 최소 잔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 ‘0’을 의미한다.</p>	<p>"<u>고정 잔액</u>"이란,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u>CCS 부속서에</u>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그러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 시스템 상 고정 잔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잔액 “0”을 의미한다.</p>
	<p>(신설) "<u>역 스위핑 옵션</u>"이란, 한 통화와 관련하여 3.1조항에 따른 전 영업일의 자금이체 후 익영업일 영업 개시 이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다음과 같은 이체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p> <p>(a) 현금집금 모계좌에서 각 현금집금 연결계좌로, 3.1(a)조항에 따른 이전 영업일의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대한 본래의 지급 또는 이체 금액에 해당하는 총액을 이체, 또는,</p> <p>(b) 현금집금 연결계좌에서 현금집금 모계좌로, 3.1(b)조항에 따른 이전 영업일의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대한 본래의 지급 또는 이체 금액에 해당하는 총액을 이체 (해당 사항에 따라)</p> <p>(신설) "<u>서비스 양식</u>"은 1.1조항에서 정의된 바를 의미한다.</p>

<p>"스위핑 금액"이란 해당 "현금집금"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현금집금연결계좌에 대한 지급 또는 이체와 관련하여,</p> <p>아래 (b)항의 조건에 구속되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결정한 금액으로, 동 금액으로 인하여 최소 잔액이 상기 현금집금연결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p> <p>상기 현금집금연결계좌에 대한 스위핑 한도가 지정되고 (a)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동 스위핑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스위핑 한도 금액을 의미한다.</p> <p>"스위핑 오더"란 해당 "현금집금서비스" 부속서 7 조항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오더를 의미한다.</p> <p>"스위핑 시간"이란, 현금집금연결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현금집금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시간,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고객간 합의에 따라 지정된 각 영업일의 시간을 의미한다.(스위핑 빈도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p>	<p>"스위핑 금액"이란 CCS 부속서에 따른 현금집금 연결계좌로의 지급 또는 이체와 관련하여, (a) 아래 (b)조항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현금집금 연결계좌에서 최소 잔액이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액, 그리고 (b) 해당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대해서 자금 요청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상기(a)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동 자금요청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 자금요청한도에 해당하는 금액</p> <p>"스위핑 오더"란 CCS 부속서에 명시된 3조항에 따른 이체 이행에 대한 지시를 의미한다.</p> <p>"스위핑 시간"이란,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CCS 부속서에 스위핑 시간으로 명시된 시간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과 고객간 합의된 스위핑 빈도에 따른 각 영업일의 시간을 의미한다.</p> <p>(신설) 2.2 기본 약관의 1.2, 1.3, 1.7 조항은 이들 조항이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본 CCS 보총 약관 그리고 CCS 부속서에서도 적용된다.</p>
<p>(서비스약관) 3.6 단독 또는 상기 서비스와 연관된 현금집금서비스</p> <p>(a) 3.6(b), 3.6(c), 3.6(d) 조항에 따라, 각 영업일 스위핑 시간 이후 현금집금연결계좌에 고정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다음의 지급 또는 이체를 지시하며, 동 지시는 각 영업일 스위핑 시간 직후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p> <p>(i) 먼저, 각 통화에 대하여, 해당 통화의 현금집금 연결계좌에서 현금집금 모계좌로, 동 연결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 중 고정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p> <p>(ii) 그리고, 각 통화에 대하여, 해당 통화의 현금집금 모계좌에서 현금집금 연결계좌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 현금집금 연결계좌의 스위핑 금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순으로 이제 (그리고, 만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세금 관련 공제 또는 원천징수액을 지급 또는 이체하여야 하는 경우, 현금집금 모계좌로부터 지급 또는 이체되는 금액은 상기 공제 또는 원천징수 시에도 현금집금연결계좌에 수령 또는 보관되는 총액이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이후에도 스위핑 금액과 동일하도록 증액되어야 한다) 단, GLS약관 또는 서비스 부속서의</p>	<p>(GLS 보총약관 - 현금집금서비스) 3. 현금집금서비스</p> <p>3.1 3.2 와 3.3조항에 따라 각 참가자는 각 통화와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다음의 지급 또는 이체 이행 지시를 내리며, 각 지급 또는 이체는 스위핑 시간 직후 그 효력을 발휘한다.</p> <p>(a) 먼저, 각 현금집금 연결계좌로부터 해당 통화의 현금집금 모계좌로, 지급 또는 이체 결과 출금가능/자금결제일 금액이 동 계좌의 고정 잔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이체 한다.</p> <p>(b) 다음으로, 해당 통화의 현금집금 모계좌에서 각 현금집금 연결계좌로 해당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대한 스위핑 금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지급 또는 이체한다. 만일 CCS 부속서에 스위핑 오더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스위핑 오더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한다.</p> <p>단, 마스터 은행과 관계은행은, 상기의 지급 또는 이체 금액이 최소 스위핑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 지급 또는 이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1조항에 따른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 공여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사전</p>

“요청서비스”부분에서 스위핑 지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 및 내용으로 이루어진)가 선택된 경우에는 동 스위핑 지시서에 명시된 순으로 해당 현금집금연결계좌에 입금한다.

단, 상기 지급 또는 이체 금액이 최소 스위핑 금액 미만일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은 동 지급 또는 이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는 마스터 은행 또는 관계 은행의 사전 승인 시 제공 될 수 있다.

(b) 3.6(a) 조항에 따른 각 참가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급 또는 이체 금액의 총액이 현금집금모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 관계 은행은 참가자 또는 고객에 이체 또는 지급할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c)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3.6(a)조항에 따른 각 참가자 그리고 고객의 지시에 응할 수 있으며, 해당 지급 또는 이체 금액의 총액이 현금집금모계좌의 출금가능/자금 결제일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6(a)(ii)에 따라 이체 또는 지급 할 수 있는 단독적이며 절대적인 재량권을 소유함을 인정한다.

(d)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3.6(a)조항에 따른 현금집금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신용 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서비스 약관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신용 공여는 반드시 비구속(uncommitted credit facility)방식이어야 하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요청 시 언제든지 취소, 상환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언제든지 단독적인 결정에 따라 동 요청을 할 수 있다).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과 각 참가자는 상기 신용공여로 차입한

승인을 받은 경우 제공될 수 있다.

3.2 3.1조항에 따른 각 참가자와 고객으로부터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은행과 관계은행은, 해당 지급 또는 이체 총액이 해당 현금집금 모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참가자 또는 고객에게 3.1조항에 따른 이체 또는 지급을 이행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3 상기 조항에 대한 어떠한 침해 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a) 해당 이체와 관련된 계좌에 출금가능 예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합의 및 지시된 당좌차월이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3.1조항에 따라 각 참가자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지시서에 따라 조치하고, 3.1조항에 따른 이체를 이행, 그리고

(b) 내부관리 조치로써, 3.3(a)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 이행 의향을 반영하는 시스템상 한도를 설정.

이는 영업일 중 지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영업일 중 또는 스위핑 타임 이후 이지만 충분치 않은 시간에 출금가능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고객은 3.3(a)조항에 따른 마스터 은행 또는 관계은행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지 또는 3.3(b)에 따른 한도 설정 수준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을 가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또한 고객은 3.3조항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취한 어떠한 조치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합의된 당좌차월 제공 또는 기타 신용공여 합의를 허용하거나 야기하는 행위 또는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3.4 3.2 와 3.3조항에 대한 어떠한 침해 없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상기 3.1조항에 따른 현금집금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를 제공 할 수 있다.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용공여는 항상 비구속적(uncommitted credit facility)이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요청시 즉시 취소 또는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과 각 참가자는, 이러한 신용공여로 차입된 자금을 상기 3.1조항에 준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동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방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결정에 따른다.

차금을 3.6(a) 조항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동 신용 공여의 이율 및 방식은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 동 현금집금연결계좌 또는 현금집금모계좌의 이자 기간 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각 현금집금연결계좌 및 현금집금모계좌에 대하여 동 이자기간에 부리된 예금 또는 대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다.

(f) 고객 및 각 참가자는 동 이자기간 말에 상기 3.6(e)조항에 따라 산출된 대출 이자의 총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지급한다.

(g)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동 이자기간 말에 상기 3.6(a)조항에 따라 산출된 예금 이자의 총액을 해당 현금집금모계좌 또는 현금집금연결계좌에 입금한다.

(h) 만일 현금집금모계좌가 IOF 계좌 그리고/또는 SCP 연결계좌인 경우, 3.2, 3.3, 3.5 조항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산출, 지급/부과 한다. SCP 연결계좌, IEF 계좌, IOF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부속서와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한다.

3.5 현금집금 연결계좌 또는 현금집금 모계좌(해당사항에 따라)의 이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CCS 부속서 그리고 현금집금 모계좌에 이자율이 명시된 각 현금집금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CCS부속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해당 이자 기간동안 결정된 해당 현금집금 연결계좌 또는 현금집금 모계좌에 부리된 예금 또는 대출 이자의 총액을 산정한다. 만일 CCS부속서에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대한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계좌에 대한 이자는 동 계좌에 적용되는 약관 그리고/또는 동 계좌가 개설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리된다.

3.6 고객과 각 참가자는 이자기간 말일에 3.5조항에 따라 산출된 대출 이자의 총액을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지급해야한다.

3.7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이자 기간 말일에 3.5항에 따라 산출된 예금 이자 총액을 해당 현금집금 모계좌 또는 현금집금 연결계좌에 입금해야한다.

(삭제)

(신설) 3.8 현금집금 연결계좌 또는 현금집금 모계좌에 대한 입금을 위해 제시된 수표 및 기타 지급 지시가 상기 3.1조항에 따른 이체 완료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든 부도처리 된 경우,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해당 모계좌 또는 연결계좌에서 부도처리된 해당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신설) 3.9 서비스 양식에서 현금집금 서비스가 기타 서비스와 함께 선택되었고, 해당 현금집금 모계좌가 기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계좌인 경우, 서비스 양식에 첨부된 해당 기타 서비스의 보충 약관에 따라 이자가 산정 및 지급된다. 동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비스 양식에 첨부된 기타 서비스 관련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한다.

(서비스약관) 3.3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단독 서비스

(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각 통화에 대하여, 일별로 다음을 (삭제)
이행하여야 한다.

- (i)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 부속서 3 항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고객간 서면 합의된 기타 이율을 사용하여, 각 SCP 연결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과 해당일 동 잔액에 대하여 부리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 금액을 산정한다.
- (ii) 모든 SCP 연결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순잔액을 산정하고,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부속서 3 항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순잔액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과 고객간 서면 합의된 기타 이율을 사용하여, 해당일 순잔액에 대하여 부리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 금액을 산정한다.
- (iii) 아래 (a)(i)조항에 따라 산정된 각 SCP 연결계좌에 부리된 대출 그리고/또는 예금 이자의 총액을 산정한다.
- (iv) (a)(ii)조항에 따라 산출된 순 대출 또는 순 예금 이자에서 (a)(iii)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 산출된 금액을 순 “재정산이자(Advantage)”라 하며 플러스 또는マイ너스 재정산이자 배분 금액을 산출한다.
- (v) GLS 약관 Section 1 또는 서비스 부속서의 “요청서비스”란에서 재정산이자 배분 방법이 선택된 경우, “재정산이자 배분”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따라 각 SCP 연결계좌에 대한 플러스 또는マイ너스 재정산이자 배분 금액을 산출한다.

(b) 각 이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은 다음을 이행한다. (삭제)

각 SCP 연결계좌에 대하여, 이자기간동안 해당 SCP 연결계좌에 부리된(산출 시점에 지급되었는지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나 기본 약관 10.2 조항에 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됨) 일별 대출 그리고/또는 예금 이자를 산출, 3.3(a)(i)에 따라 산출된 일별 수치를 합산하여 해당 SCP 연결계좌에 이체한다.

<p>(i) 이자기간동안 플러스 순재정산이자 과 마이너스 순재정산이자를 각각 산출하여(a)(iv)에 따라 산출된 일별 금액을 합산한다</p> <p>(ii) 해당 “재정산이자 배분”부속서/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 부속서 또는 서비스 부속서에 따라 재정산이자배분 연결계좌 또는 지정계좌에 순재정산이자를 합산한다.</p>	
<p>(서비스약관) 3.4 단일통화통합관리- IOF 서비스와 연계</p> <p>IOF 서비스가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와 연계 제공되는 경우,</p> <p>(a) 3.3(a)(ii)조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은 IOF 서비스에서는 IOF 계좌로 간주되며, 3.2 조항에 언급된 각 IOF 계좌는 3.2 개별계좌 또는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 <p>(b) 3.3(a)(ii) 조항에 따라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에 대하여 부리되는 대출 또는 예금 이자 금액은 순잔액의 커버드 잔액에 대해 산출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와 3.2(a)(iii)조항에 따라 순잔액의 잔여잔액에 대해 산출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p> <p>(c) 해당 단일통화집중관리의 순잔액에 대해서는 3.2(b)조항에 명시된 이자의 입금 또는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3.4(b)조항에 따른 순잔액에 해당하는 순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적용하여 3.3(a)(iv)조항에 따른 재정산이자를 산출하게되며, 동 재정산이자는 3.3(b)조항에 명시된 재정산이자배분 연결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이체된다.</p> <p>(d) 본 3.4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와 IOF 서비스는 3.2 그리고 3.3조항의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p>	(삭제)
<p>(서비스약관) 3.7 단일통화통합관리- IEF 서비스와 연계</p> <p>IEF 서비스가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경우:</p> <p>(a) 3.3(a)(ii)조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은 IEF 서비스에 따른 참가 계좌로 취급되며, 3.5 조항의 참가 계좌에 대한 언급은 개별 계좌 또는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 <p>(b) 3.3(a)(ii)조항에 따라 해당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에 대하여 부리되는 대출 또는 예금 이자 금액은 3.6(b)(ii)조항에 따른 해당 우대 이율을 기준으로</p>	(삭제)

<p>산출 된다.</p> <p>(c) 단일통화통합관리의 순잔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자도 3.5(b)(ii)조항에 따라 출금 또는 입금되지 않으며. 3.3(a)(iv)조항에 따른 재정산이자 산출시에는 3.7(b)조항에 따라 순잔액에 적용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사용하여, 이를 통해 산출된 재정산이자는 3.3(b)조항에 따라 재정산이자 배분연결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이체 된다.</p> <p>(d) 3.7 조항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단일통화통합관리서비스와 IEF 서비스는 3.3 조항 및 3.5 조항에 따라 운영된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p> <p>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약관은 본 부속약정(이하 ‘국가별 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수정되며 이러한 수정의 범위는 부속서에서 정한 조건에 한정된다.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약관에 의해 은행에 부여된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추가하여 본 국가별 조건에 따라 은행에 부여된 권리에 한하여, 본 국가별 조건에 포함된 상기 추가적인 권리는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약관의 관련 규정을 보충하고 이를 대신한다.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약관에서 정의된 표현들은 본 국가별 조건에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p>	<p>(GLS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1. 개요</p> <p>GLS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관련 행정 명령의 준수를 위해 본 국가별 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수정된다. GLS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된 유사한 성격의 권리와 더불어 본 국가별 조건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에 한하여, 본 국가별 조건에 포함된 추가적인 권리는 유사한 권리와 관계된 GLS약관의 해당조항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GLS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본 국가별 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1. 적용의 범위</p> <p>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국가별 조건은 한국에 개설되고 유지되었거나, 향후 개설되어 유지될 계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2. 적용</p> <p>본 국가별 조건의 적용 조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u>대한민국 법이 GLS약관의 준거법으로 선택된 경우,</u> (b) <u>계좌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u> (c) <u>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u>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2. 재정산이자</p> <p>각 고객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재정산이자 중 예금계좌에 대한 재정산이자 배분액은 추가적인 예금이자로 지급하며 대출계좌에 대한 재정산이자 배분액은 대출이자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p>	<p>(삭제)</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3. 언어</p> <p>(신규) GLS 약관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고,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3. 외환</p> <p>고객은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수령하게 될 모든 거래를 위하여, 또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유지 및 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동의, 승인이나 수권 일체(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자금통합관리와 관련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획득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p> <p>또한, 고객은 자금통합관리에 관련된 모든 한국내 모든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한다.</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4. 외환</p> <p>다음 조항은 기본약관의 6.1(f) 이후에 삽입되며 이후 조항의 번호는 이에 맞게 수정된다.</p> <p>"(g) 고객과 각 참가자의 계좌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 고객과 각 참가자는 해당 계좌의 개설 및 유지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과의 계약 유지(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자금통합관리와 관련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부 인허가, 동의, 승인, 수권 일체를 획득하였다.</p> <p>(h) 고객과 각 참가자는 GLS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 할 것이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7. GLS약관의 해지 등</p> <p>글로벌 유동성관리 서비스 약관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GLS 약관을 즉시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란 본 서비스의 적용대상 계좌에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거나 그 외 적용 약관에 의하여 해당계좌에 대한 고객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및 고객의 고의에 의한 거래 조작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은행이 판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5. GLS 약관의 해지</p> <p>(신설) 5.1 기본약관 11.1(b)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p> <p>(b) 다음의 사유로 인한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통지에 의한 즉시 해지</p> <p>(i) 하나 이상의 참가자 또는 고객의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금전채무 불이행 혹은 의무불이행</p> <p>(ii)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법규정상의 보고 의무의 중대한 변경; 또는</p> <p>(iii) 고객 또는 참가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좌와 관련된 마스터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p> <p>(iv) 고객의 경영이나 영업상황에 매우 불리한 변화가 생겨 건전한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p> <p>5.2 아래 조항이 기본 약관 11.5 조항 뒤에 삽입된다.</p> <p>"11.611.3(b) 조항에 명시된 "GLS약관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본 서비스의 적용 대상에 (가)압류 명령 또는 통지가 진행되거나, 그 외 적용 약관에 의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및 고객 그리고 각 참가자의 고의에 의한 거래 조작 등으로 인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GLS약관에 따른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와</p>

	<p>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1.7 또한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가 상기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의 정확한 확인 및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유엔(UN) 및 국제 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포함된 자 등에 대하여는 GLS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8. 수수료와 이자</p> <p>GLS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수수료는 은행의 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수료를 참조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다.</p> <p>본 GLS 서비스의 적용대상 계좌로 휴일에 자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부터 이자가 부리된다.</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6. 수수료와 이자</p> <p>해당 계좌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 동 계좌와 관련하여 기본 계약서의 13.2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p> <p>“13.2 GLS약관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의 상호 협의하에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의 지역 본부의 표준 수수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p> <p>해당 계좌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다음 조항이 기본 약관의 13.3 조항 다음에 삽입된다.</p> <p>“13.4 서비스가 적용되는 계좌에 대한 입금이 비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입금일의 익영업일로부터 부리된다.”</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4. 은행의 책임</p> <p>은행은 다음의 경우 고객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p> <p>4.1 (i) 천재지변, 전쟁 또는 테러, 또는, (ii) 은행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전력공급의 중단, 화재, 빌딩의 파괴 기타 사유 등과 같은 불가항력</p> <p>4.2 고객이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의 접근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p> <p>4.3 고객이, 제3자가 고객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무단</p>	<p>(GLS 국가별조건(한국)-기본약관) 7. 세금</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의 접근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누설이나 공개를 허락하는 경우</p> <p>4.4 관련 과세당국이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i) 어느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현금집금서비스(Cash Concentration Service)의 경우를 말함) 또는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부인 및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ii) 재정산이자의 고객별 배분, 고객별 우대금리 적용, 고객 상호간 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의 수수(현금집금서비스의 경우를 말함) 또는 고객간 상호보증에 대한 적정대가의 수수 등과 관련하여 과세하는 경우</p>	<p>아래 조항이 14.7 조항 이후에 삽입된다.</p> <p>“14.8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과세 당국이 한국의 관련 조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다음의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에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p> <p>(a)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다른 고객그리고/또는 참가자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또는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 과세 당국이 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부인 및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p> <p>(b) 커버잔액에 대한 우대 금리, 우대금리, 고객 그리고 각 참가자간 대여금/인정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조정 등과 관련하여 과세하는 경우”</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5. 예금이자에 대한 은행의 원천징수</p> <p>은행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재정산이자 배분액 포함)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기로 하며, 향후 과세당국이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은행에 보상하여야 한다.</p>	<p>(삭제)</p>
	<p>(GLS국가별조건(한국)-보충약관-현금집금서비스) 1. 개요</p> <p>(신설) GLS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관련 행정 명령의 준수를 위해 본 국가별 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수정된다. GLS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된 유사한 성격의 권리와 더불어 본 국가별 조건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에 한하여, 본 국가별 조건에 포함된 추가적인 권리는 유사한 권리와 관계된 GLS약관의 해당조항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GLS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본 국가별 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p>
	<p>(GLS 국가별조건(한국)-보충약관-현금집금서비스) 2. 적용</p> <p>본 국가별 조건의 적용 조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d) 대한민국 법이 GLS 약관의 준거법으로 선택된 경우, (e) 계좌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f)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p>

<p>(국가별조건 부속약정-대한민국) 6. 현금집금서비스</p> <p>글로벌 유동성 관리 서비스 약관 제 3.6 조에도 불구하고, 현금집금서비스 참가 고객간에 자금을 이제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본 부속약정 제 3 조에서 정한 외환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간의 자금이동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의 수령 및 원천징수과세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상호간에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p>	<p>(GLS국가별조건(한국)-보충약관-현금집금서비스) 3. 현금집금서비스</p> <p><u>다음 조항이 3.9조항 뒤에 삽입된다.</u></p> <p>“3.10 3조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집금서비스 참가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 간에 자금을 이제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계좌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는 기본 약관 6.1(g), (h) 조항에서 정한 외국환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과 각 참가자간의 자금 이동에 대한 이자의 수령 및 원천징수과세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 이자를 산출하고 동 원천징수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	--